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3. 25.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04호 및 제505호로 2025년 3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의거, 민생경제 회복 및 안전환경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요청함.

3. 주요 내용

◎ 2025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계	934,810,663	927,201,210	7,609,453	0.82%
일반회계	907,997,174	900,387,721	7,609,453	0.85%
특별회계	26,813,489	26,813,489	0	0%
의료급여기금	677,164	677,164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2,200	52,200	0	0%
주 차 장	24,337,125	24,337,125	0	0%
건축안전	1,747,000	1,747,000	0	0%

4.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가. 일반회계 ----- 7,609,453천원

1) 세입예산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본예산+간주예산)	증(△)감	비 고
계	907,997,174	900,387,721	7,609,453	
지방세 수입	222,098,628	222,098,628	0	
보통세	221,316,639	221,316,639	0	
지난연도 수입	781,989	781,989	0	
세외수입	85,607,418	85,607,418	0	
경 상 적 세외수입	75,029,817	75,029,817	0	
임 시 적 세외수입	2,920,842	2,920,842	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4,875,517	4,875,517	0	
지난연도 수입	2,781,242	2,781,242	0	
지방교부세	10,406,000	10,406,000	0	
조정교부금	109,173,955	102,320,102	6,853,853	- 일반조정교부금 6,853,853
보 조 금	413,231,373	412,475,773	755,600	
국고 보조금	247,130,337	246,990,337	140,000	-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운영 120,000 -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20,000
시비 보조금	166,101,036	166,485,436	615,600	- 시장경영패키지 지원△14,400 - 다목적 CCTV 설치 630,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7,479,800	67,479,800	0	
보전수입등	65,000,000	65,000,000	0	
내부거래	2,479,800	2,479,800	0	

2) 세출예산 편성 내역

● 주요사업 추경예산 총편성액----- 7,609,453천원

사 업 명	예산 현액	기정액	추경 요구액 (증/감)
계	907,997,174	900,387,721	7,609,453
< 미래도시국 >			
청년정책과			
청년성장 프로젝트(청년카페) 운영 ^신	150,000 (국 120,000) (구 30,000)	0	150,000 (국 120,000) (구 30,000)
정원도시과			
맨발길 조성 사업	1,750,000	1,500,000	250,000
동산마을마당 옹벽 정비 ^신	200,000	0	200,000
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113,600	80,000	33,600
생활권 반려식물클리닉 근로자 채용 ^신	80,228	0	80,228

사 업 명	예산 현액	기정액	추경 요구액 (증/감)
어린이 공원 정비	122,000	22,000	100,000
공원조성 시설물 정비 ^신	30,000	0	30,000
녹지초소 개선 사업	150,000	100,000	50,000
안양천 황톳길 유지관리	128,709	100,975	27,734
< 행정국 >			
홍보미디어과			
영등포 소식지 발간	619,427	377,040	242,387
자치행정과			
동청사 시설보수	370,943	290,000	80,943
반장 활동 지원 ^신	189,430	0	189,430
동장 순찰 활동 강화 ^신	48,600	0	48,600
자율방법대 운영지원	20,000	10,000	10,000
< 기획재정국 >			
일자리경제과			
매력일자리 사업 (중장년 커리어 설계 전문가)	24,570 (시 17,199) (구 7,371)	17,199 (시 17,199) (구 0)	7,371 (시 0) (구 7,371)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117,500	37,500	80,000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운영	315,800	79,825	235,975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상생 장터)	187,000	49,500	137,500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109,670 (시 0) (구 109,670)	28,800 (시 14,400) (구 14,400)	80,870 (시 ▲14,400) (구 95,27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신	79,866	0	79,866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신	2,000,000	0	2,000,000

사 업 명	예산 현액	기정액	추경 요구액 (증/감)
〈 복지국 〉			
보육지원과			
직장 어린이집운영 지원 ^신	32,850	0	32,850
민간·가정어린이집운영 지원 ^신	16,200	0	16,200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82,512	38,512	44,000
어르신장애인과			
경로당 운영지원 ^신	8,597	0	8,597
〈 생활환경국 〉			
가로경관과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674,916	490,985	183,931
통신주 이설비 ^신	30,000	0	30,000
청 소 과			
대림동 청결도 향상 ^신	387,420	0	387,420
환 경 과			
맑은 공기 보전	118,356	88,356	30,000
〈 안전교통국 〉			
도시안전과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 ^신	40,000 (국 20,000) (구 20,000)	0	40,000 (국 20,000) (구 20,000)
방법용 CCTV설치 및 운영	1,785,770 (시 630,000) (구 1,175,770)	755,770 (구 755,770)	1,030,000 (시 630,000) (구 400,000)

사 업 명	예산 현액	기정액	추경 요구액 (증/감)
도 로 과			
노후 조명시설 골목길 정비사업(신규)	250,000	0	250,000
교통행정과			
대림동 일대 자전거 보관대 시설 개선 공사 ^신	145,000	0	145,000
〈 도시공간국 〉			
주거사업과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2구역 정비계획 변경 ^신	120,000	0	120,000
〈 보 건 소 〉			
건강증진과			
매력일자리 사업 (희망·행복·건강지킴이) ^신	27,720 (시 19,404) (구 8,316)	19,404 (시 19,404) (구 0)	8,316 (시 0) (구 8,316)

나.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일반회계)

(단위:천원)

부 서 별		최종예산	기정액	증감액 [추경편성액]	증감률[%]
총 계		283,901,232	279,531,339	4,369,893	1.56
감담당사관	감담당사관	269,718	269,718	0	0
행정국	총무과	137,351,335	137,351,335	0	0
	홍보 미디어과	2,587,638	2,345,251	242,387	10.34
	자치 행정과	11,275,173	10,946,200	328,973	3.01
	미교 교육과	35,837,348	35,837,348	0	0
	문체 체육과	35,856,065	35,856,065	0	0
	민여 권과	1,421,368	1,421,368	0	0
기재정국	기획 예산과	7,997,849	6,829,214	1,168,635	17.11
	일자 경제과	9,257,863	6,636,281	2,621,582	39.50
	재무과	725,341	725,341	0	0
	징수과	889,307	889,307	0	0
	재산세과	584,911	584,911	0	0
	지방 소득세과	386,391	386,391	0	0
보건소	보건 생과	12,334,150	12,334,150	0	0
	생강 건강과	12,611,443	12,611,443	0	0
	건강 증진과	13,424,393	13,416,077	8,316	0.06
	의약과	1,090,939	1,090,939	0	0

다.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일반회계)

【행정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총계	224,328,927	223,757,567	571,360	0.26% 증
홍보 미디어과	2,587,638	2,345,251	242,3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 소식 발간 242,387
자치 행정과	11,275,173	10,946,200	328,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청사 시설보수 80,943 ◦ 반장 활동 지원 189,430 ◦ 동장순찰 강화활동(동행정 주민소통 강화) 48,600 ◦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10,000

【기획재정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총계	19,841,662	16,051,445	3,790,217	23.61% 증
기획예산과	7,997,849	6,829,214	1,168,6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68,635
일자리 경제과	9,257,863	6,636,281	2,621,5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력일자리사업 7,371 (중장년 커리어 설계 전문가)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80,000 ◦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운영 235,975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상생 장터) 137,500 ◦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80,870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79,866 ◦ 기금전출금(중소기업육성기금) 2,000,000

【보건소】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총계	39,460,925	39,452,609	8,316	0.02% 증
건강 증진과	13,424,393	13,416,077	8,316	○ 매력일자리 사업 (희망·행복·건강지킴이) 8,316

5. 검토의견

가.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2,795억 3,134만원에서 43억 6,989만원이 증액된 2,839억 123만원으로 증감률은 1.56%임.

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1) 행정국

-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37억 5,756만원 대비 5억 7,136만원이 증액(0.26%)된 2,243억 2,892만원으로, 이는 주요 구정 사업 및 의정 활동을 모든 구민에게 차별 없이 전달되도록 영등포 소식지 제작을 확대하였으며, 노후된 동청사 시설 보수 비용과 반장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반장에 대한 지원 비용, (舊)영등포동 주민센터에 있던 노후된 자율방범대 초소 교체 및 이전 설치 비용이 증액 편성되고, 생활 불편 해소를 동 자체에서 즉시 정비 가능한 소규모 수선비용이 신규 편성된 것이 요인임.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홍보미디어과(p.153)는 기정예산 대비 2억 4,238만원이 증액 (10.34%)된 25억 8,763만원을 계상함.
- 영등포 소식 발간(p.153)는 다양한 구정 소식 및 분야별 정보 안내를 모든 구민에게 차별 없이 전달하고자 소식지 제작 부수를 기존 9만부에서 19만 5천부(전체가구의 46.8% → 100%)로 확대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통·반장 활용하여 개별 우편함에 투입하고자 2억 4,238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 자치행정과(p.154)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897만원이 증액 (3.01%)된 112억 7,517만원을 계상함.
- 동청사 시설 보수(p.154)는 노후 동 청사 시설물을 보수하여 주민과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조성을 위해 8천 9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 동 청사 시설 보수 예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노후 동청사 시설보수 예정 현황】

(단위:천원)

연번	건 명	소요예산
1	당산1동 노후 보일러 보수 공사	14,443
2	양평1동 외부 자재창고 개선 공사	29,843
3	7개 동청사 노후 기계설비 등 보수 공사	34,320

3-1	양평2동 주민센터	9,500
3-2	여의동 주민센터	5,000
3-3	신길4동 주민센터	300
3-4	신길7동 주민센터	3,600
3-5	도림동 주민센터	1,000
3-6	당산2동 주민센터	3,700
3-7	영등포본동 주민센터	8,100

- **통반장 활동 지원(p. 154)**은 통장 대비 지원 사항이 미흡한 반장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정원 대비 60%) 및 예방 접종비(정원 대비 20%, 65세 미만 반장) 추가 지원을 통해 반장의 사기 진작과 임무 수행 능력을 도모하기 위해 1억 8,943 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반장 현황은 다음과 같음.

【반장 현황】

(단위: 명)

정원	통신요금 지원 대상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 (65세 미만)
	2,991	997
4,985	반장 현원 수(정원의 약 56%) 및 지원사항 확대에 따른 반장 현원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60% 산출	반장 현원 중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약 18%로 추정, 현원 증가 및 생년월일 자료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20% 산출 ※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무료 접종 대상

- **동장 순찰 활동 강화(p.154)**는 동(洞)에서 처리 가능한 생활 민원은 한정되어 있어 그간 소관(처리)부서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나,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소규모 수선비 성격의 예산을 각 동(洞)에 배정하여 동(洞) 중심 민원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자 4천 8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p.154)는 (舊)영등포동주민센터 부지에 자활센터가 설립 착공(6월)함에 따라 주차장 진입로에 위치한 영등포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이전·교체 하여야 하며 노후된 자율방범대 초소 간판들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1천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한 것에 기인함.

【자율방범대 간판 교체 설치 대상】

24년도 실시	25년도 예정
8개소 (연합대, 영본동, 양평1·2동, 도림동, 신길5동, 대림1·3동)	5개소 (영등포동, 문래동, 신길3·5동, 대림2동)

(2) 기획재정국

-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억 5,144만원 대비 37억 9,021만원이 증액(23.61%)된 198억 4,166만원으로, 이는 민간 협력형 공공 배달앱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상생장터),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이 증액 편성되고, 기금 전출금(중소기업육성기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매력일자리사업(중장년 커리어 설계 전문가),
가 신규 편성 된 것이 요인임.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기획예산과(p.157)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6,863만원이 증액(17.11%)된 79억 9,785만원이 계상된 바,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p.157) 11억 6,863만원 신규 편성한 것에 기인함.
- 일자리경제과(p.158)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2,158만원이 증액(39.5%)된 92억 5,786만원을 계상하였음.
- 매력일자리사업(중장년커리어설계전문가)(p.158)은 '25년 서울시 매력일자리 공모사업(시·구비 매칭사업)으로써 구직·창업 을 원하는 중장년 구직자 지원 시설(영등포구 통합 일자리플러스 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플랫폼)에서 일자리 상담 및 시설 운영지 원 업무를 위한 중장년커리어설계전문가를 채용하여 시비는 간주 처리 후, 구비 매칭분인 737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p.158)은 그간 관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무역 사절단을 모집하여 판로를 개척하였으나 효과 및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24년부터 중소 기업들이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상품 및 서비스 판매 홍보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전시회 개최지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해외 5백만원, 국내 2백5십만원)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전시회 참가 지원 신청업체가 25개사 증가하여 그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여 8천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함.

-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운영(p.158)**은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본래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자 할인보전금 및 발행 수수료 등을 추가한 2억 3,597만원을 증액 편성함.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p.159)**은 상생 장터 개최 및 각종 이벤트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월 1회 1일간 전통시장만 참여하던 어울림 장터에서 월 1회 5일간 첫째 날에는 지방+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고,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타시군을 제외한 우리구 소상공인 위주로 장터를 개장하는 방식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1억 3,75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함.
- **시장경영패키지 지원(p.159)**은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상인회의 자율적 시장경영혁신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을 4개 시장(대림중앙시장, 영등포전통시장, 영등포청과시장, 선유도역골목형상점가)에서 진행하며 고객 쉼터 관리 및 상인회 행정업무

지원 매니저를 배치(대림중앙시장, 영등포청과시장, 나머지 시장은 서울시 매력일자리 사업으로 既배치)하는 내용으로써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인해 시비 삭감 후 구비로 8,087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함.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p.160)은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영신상가: LED간판 설치, ▲대림중앙시장: 안내게시판, 차양막 천갈이 공사)를 위해 7,986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함.
- 기금전출금(p.160)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 확대(60억원(상반기 40억원/하반기 20억원)→80억원(상반기 40억원/하반기 40억원))를 통하여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금전출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억원을 신규 편성을 요구함.

(3) 보건소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4억 5,261만원 대비 831만원 증액(0.02%)된 394억 6,092만원으로, 매력일자리 사업(희망·행복·건강지킴이) 증액 편성된 것이 요인임.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건강증진과(p.163)는 기정예산 대비 831만원이 증액(0.06%)된 134억 2,439만원이 계상되었음.

희망, 행복, 건강 지킴이(p.163) 831만원 증액 편성한 것에 기인함.

- 희망, 행복, 건강 지킴이 사업(p.163)은 '25년 서울시 매력일자리 공모사업(시·구비 매칭사업)으로써 지역사회 건강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사례관리와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 취약 계층의 안부 확인 업무를 위한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시비 간주 처리 후, 구비 매칭분인 831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 대상 :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 변경요구액: 26억 6,246만원

* 기금현황

(단위: 천원)

기금명	수입액	기정액	증감액	비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11,694,333	9,031,870	2,662,463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0
				전년도결산 잉여금	774,819
				공공예금이자	17,000
				융자원금수입	△97,959
				융자회수이자	△31,397

- 변경 사유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전년도결산잉여금 7억 7,481만원 및 공공예금이자 1천 7백만원이 증액되고 융자금원금수입 9천 795만원과 융자금 회수이자 3천 139만원 감액에 따른 수입·지출 계획 변경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정책사업의 2/10 이상 금액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당초 2025년도 자금운용계획에서 90억 3,18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6억 6,246만원 증액 변경함에 따라 116억 9,433만원으로 편성됨.
 - 수입 증감액은 26억 6,246만원으로 전입금 20억, 예치금 회수 7억 7,481만원, 이자수입 1천 7백만원 증액되고, 융자금회수 1억 2,935만원 감액 편성함.
 - 지출 증감액은 26억 6,246만원으로 융자금사업비 20억, 예치금 6억 6,246만원 증액 편성함.

마. 검토결과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 2025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 예정액 반영과 국·시비 보조 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 구정 주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성과 창출 사업,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 및 도시환경조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약자와의 동행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 정부·시 보조금과 연계한 구비 분담금 등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됨.
-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으로,
-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내수 침체에 따라 경기의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생활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전체가구에 통·반장을 활용하여 개별 우편함 투여 계획인 영등포 소식지 발간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생활 정보를 제공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지만,

다문화 주민이 많은 우리 구(區)의 지역 특성, 종이 소식지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문제점 또한 예상되는 바, 건축 재정의 기초 하에 소식지 발행 부수의 증가는 규정 홍보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 영등포 소식지 배부 등 반장 역할 유도를 위해 통신비와 인플루엔자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제10조제1항1)에 의거 구청장은 통·반장의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2)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반장 활동 지원 사업(통신 요금과 예방 접종비의 추가 지원)의 예산은 일반적인 지원 시책 마련 규정 정도로는 부족하고 예산편성에 앞서 조례에 지원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민간 융자금으로 20억을 적립하는 내용이며 당초 60억원(상반기 40억원

1) 제10조(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적 장부의 무료 열람,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등 통·반장의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하반기 20억원)서 80억원(상반기 40억원/ 하반기 40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민생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국가재정법」 제89조³⁾에서는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을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을 별도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 「국가재정법」의 편성요건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거나(시급성), 지난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예측불가능성) 등이 심사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본 추경예산(안)의 사업의 경우 내수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증진하고 체감 경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추경 취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